

# 2022년도 제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5. 26.(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9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87건(안전번호 제2022-46023호 ~4640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46023호는 ■■■■ 블로그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천게시물과 별도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46024호~4640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게임, 만화, 음악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64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9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2-9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64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2022-46023호~4640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46023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총 1건임.

(안전번호 제2022-4602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쇼쇼쇼'가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게시된 것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나, 현재 블로그 게시물은 비공개 또는 삭제되었

음. ■■■■ 블로그의 경우 비공개/삭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하므로, 비공개 게시물로 상정하여 검토하였음. 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천게시물은 해당 OSP가 아닌 다른 OSP에서 제공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2-46023호의 1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천게시물과 별도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현재는 심의대상 링크게시물이 비공개 또는 삭제되어 있음. 원천게시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 B 위원: 원천게시물의 소재가 ◀◀◀라고 보고되어 있음. 원천게시물이 ◀◀◀인 것은 어떻게 알아내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요청 당시 조사자료로 등록된 캡처 화면을 통해 원천게시물이 ◀◀◀에 소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B 위원: 정확한 원천 URL을 현재 알 수는 없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링크게시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직접 접속하여 원천게시물 URL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본건과 같이 원천게시물의 조

사 전 비공개 또는 삭제된 상황에서는 원천 URL 확인이 어려움. 이런 경우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증자료를 참고하게 됨.

- E 위원: 해당 게시물이 '비공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만약 게시물이 '삭제' 되었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런 경우 삭제의 대상이 없으므로 삭제의 시정권고는 이행할 수 없게 됨. 다만 경고의 시정권고는 이행되어 OSP가 게시자에게 경고를 전달함.
- B 위원: 채증 당시 원천게시물의 URL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이 건은 보호원이 직접 조사한 건이 아니라 일반인이 보호원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신고자가 신고도구가 제공하는 절차와 요건에 맞추어 직접 조사한 건임. 신고자가 원천게시물의 URL을 조사하지 않았고, 이미 게시물이 비공개 또는 삭제되어 있어 원천 URL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E 위원: 본건과 같이 비공개와 삭제가 구분되지 않는 사례에 있어 기존에도 비공개를 전제로 검토를 해왔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어떤 OSP에서는 비공개 게시물과 삭제 게시물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도록 명확히 구분하지만, 본건 OSP는 둘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기존에는 사례가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최근 유사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임. '삭제'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

렸는데, 이 경우에는 일단 '비공개' 상태로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하였음.

- B 위원: 비공개와 삭제 여부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스트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임.
- C 위원: 그렇다면 이 경우 만약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라면, 우리가 경고의 시정권고를 했을 때 결과 또는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는 누적됨. 그리고 이행될 수 없는 삭제의 경우,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 건들에 대한 시정권고 검토의견에서 보고 게시는 것과 같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결과가 됨.
- B 위원: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취지이므로, OSP입장에서는 어떤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보다는 경고 누적에 그치는 것이긴 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따라서 임의로 삭제로 판단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였는데 사실은 게시물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우리 시정권고의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의 시정권고를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삭제의 시정권고가 누적되는 경우와 경고의 시정권고가 누적되는 경우, OSP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계정정지 시정권고의 경우 그 요건에서 '삭제'의 시정권고는 제외되어 있음.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회수만 요건에 포함됨.
- B 위원: OSP로서는 누적이 된다고 해도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OSP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음.
- B 위원: 침해자에게만 기록이 쌓이는 것 같음.
- C 위원: 그렇다면 침해자 입장에서, 경고의 시정권고를 받는 것과 삭제의 시정권고를 받는 것에 차이가 있나.
- 오진해 전문위원: 누적되는 경우에, 게시물의 삭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경고의 경우 영향이 있음.
- A, B, E 위원: 경중이 반대로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되나.
- 오진해 전문위원: 삭제의 시정권고는 단순히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효과이며,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이미 삭제되어 삭제 대상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임. 반면 경고는 법문상 계정 정지 시정권고의 직접 근거가 됨. 다만 OSP의 자체 기준에 의한 계정정지 등의 자료로 삭제의 시정권고를 이용할 수는 있을 것임.



- B 위원: 그렇다면 오늘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1건, 삭제 1건의 시정 권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검토된 것이라 볼 수 있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다만 삭제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고, 경고는 게시자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음. 임의 삭제를 통해 게시물이 중간에 없어지면 그뿐이지만, 경고의 시정권고의 경우 게시자의 계정이 불법복제물을 전송하였다는 자료가 됨.
- B 위원: 삭제의 시정권고를 한다면, 그 삭제의 시정권고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포함한다는 의미 맞나. 게시자 계정에 기록이 남을 때에는 경고 회수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2-4602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46023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천게시물과 별도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2-46024호~4640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 게임, 프로그램,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중점](영화)모비우스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46035호는 웹하드에서 '[중점](영화)모비우스 (2020)'를 24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2. 3. 30. 개봉한 미국 영화로 시리즈온에서 6,900원에 서비스 중임.

(영화 '[중점](영화)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46216호는 웹하드에서 '[중점](영화)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022)'를 41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2. 4. 13. 개봉한 미국 영화로 시리즈온에서 13,400원에 서비스 중임.

(영화 '[중점](영화)파이어스타터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46294호는 웹하드에서 '[중점](영화)파이어스타터 (2022)'를 16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2. 5. 19. 개봉한 미국 영화로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2-46024호~4640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2-46024호~46409호는 모두 불법 복제 한 영상물, 게임, 프로그램,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46024호~4640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46023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2-46024호~4640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6. 2.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